
Policy and Law Report _Vol.14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6.27.~ 2022.07.03) -

July 4,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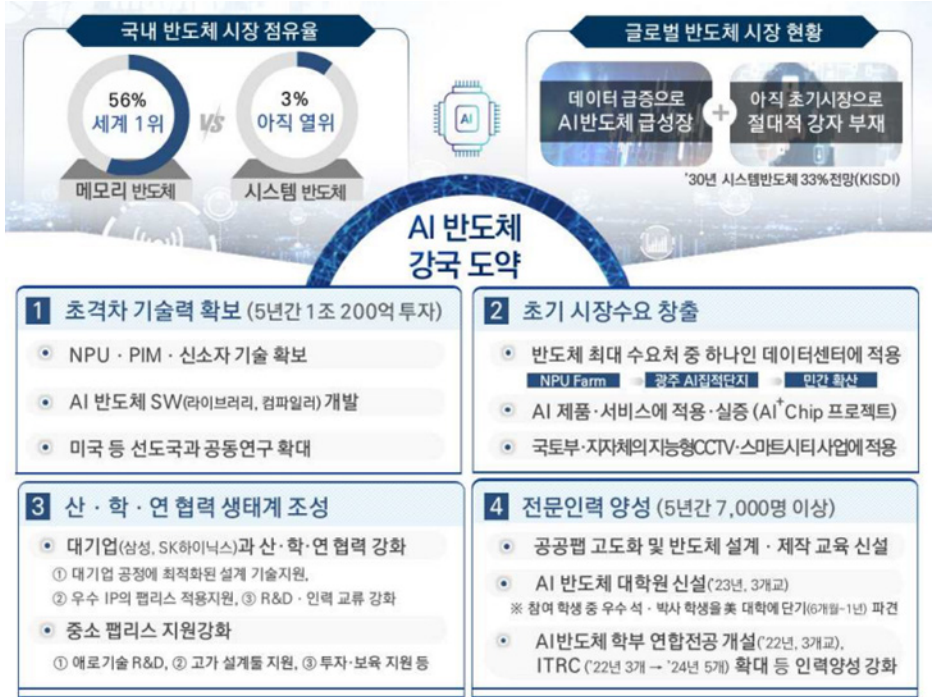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기획재정부</p>	<p>• <u>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수립</u></p> <p>한덕수 국무총리는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여 새정부의 ODA 정책방향을 담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내년도에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하고, 「'21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 임기 내 총규모 기준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 -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본격 추진 - ODA 분야 규제개혁과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한 효율성 증진과 생태계 조성 - ODA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추진역량 혁신을 통한 추진방식 선진화 <p>②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ODA 요구액은 4조 5,450억원(올해 대비 12.4% ↑)으로, 94개 수원국 및 54개 국제기구 대상, 45개 기관에서 1,898개 사업 추진 예정 - 지역별 아시아(38%)·아프리카(19%) 중심, 분야별 보건(13%)·교통(12%)·인도적 지원(11%) 順 - 분쟁·기후변화·식량 등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해 인도적 지원 확대(전년대비 33% ↑) <p>③ '21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0개 재외공관이 63개국 195개 무상원조사업 대상 점검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 수립 및 내년도 사업 심의에 반영 	<p>2022-06-30</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p>	<p>• <u>「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발표</u></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예타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 확대 <p>*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20~'29 / 과기정통부(4,880억원)·산업부(5,216억원) 등 총 1조 96억원), PIM반도체 개발('22~'28 / 과기정통부(2,897억원)·산업부(1,130억원) 등 총 4,027억원)</p>	<p>2022-06-27</p>

부처	내용	일시
	<p>②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수요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 (NPU Farm 구축 및 실증)을 '23년 신설하고 인공지능 개발자에 컴퓨팅 파워를 무상 제공 계획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인공지능 Chip 프로젝트' 신규 추진 - 지능형 CCTV, 스마트시티 등 각 부처·지자체가 구축하는 공공사업에도 국산 칩이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 <p>③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구소가 첨단 상용 공정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p>④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인력 7,000명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다양한 학과(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등)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인공지능반도체 연합전공(학부)' 개설(3개교),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반도체 시험생산 설비의 고도화 및 이와 연계한 반도체 설계·제작 교육(학부생 대상) 신설 등 추진 - 연구 중심의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을 '23년 신설(3개교)하고 참여 학생 중 우수 석·박사 학생을 해외 대학에 단기(6개월~1년)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인포그래픽 ></p>  <p>The infographic is titled 'AI Semiconductor Industry Growth Support Measures'. It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Domestic Semiconductor Market Share' and 'Global Semiconductor Market Trends'. Domestic Semiconductor Market Share: Shows a 56% share in the world for memory semiconductors and a 3% share for system semiconductors. Global Semiconductor Market Trends: Notes that AI semiconductor supply is increasing due to data center growth, but there is a significant shortage of early-stage supply, with a 33% forecast for system semiconductors by 2030 (KISDI). Support Measures (4 pillars): 1. Advanced Technology Assurance (5-year, 1.2 trillion KRW investment): Includes NPU/PIM/next-gen semiconductor technology assurance, AI semiconductor SW (libraries, compiler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research with leading countries like the US. 2. Early Market Demand Creation: Includes applying domestic semiconductors to data centers (NPU Farm, AI centers), AI products/services (AI+Chip projects), and smart cities (AI CCTV, smart city projects). 3.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Ecosystem: Include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large firms (Samsung, SK Hynix) and supporting SMEs (R&D, IP, R&D, talent training, R&D, design support, investment/education support). 4. Specialized Talent Training (5-year, 7,000+ people): Includes public R&D and semiconductor design/production education, AI semiconductor university centers (23, 3 schools), and AI semiconductor joint programs (22, 3 schools; ITRC (22, 3 schools -> 24, 5 schools) expansion for talent training).</p>	

부처	내용	일시								
금융 감독원	<p>•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 이슈·업종 사전예고</p> <p>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고,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기로 함</p> <p>*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수익 인식</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인식 *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 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 무이행시 수익인식 • 수익인식 관련 주석 공시 * 범주별(계약 유형 및 존속 기간별 등) 수익 구분, 계약잔액,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 ※ (업종) 비제조업(단, 건설업은 제외)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및 충분한 검증절차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영업·투자·재무활동별 현금흐름정보 표시 • 비현금거래 등 관련 주석 공시 ※ (업종) 전 업종 </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사업결합</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 * 채무불이행·연체 같은 계약 위반,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 등 • 기대신용손실 측정 및 관련 주석 공시 *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 (업종) 제조업(단, 의약품 및 전자부품 업종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대가와 식별가능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공정가치 평가 * 평가가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근거 • 사업결합 내용 등 관련 주석 공시 * 이전대가, 주요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금액 등 ※ (업종) 전 업종 </td> </tr> </table>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인식 *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 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 무이행시 수익인식 • 수익인식 관련 주석 공시 * 범주별(계약 유형 및 존속 기간별 등) 수익 구분, 계약잔액,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 ※ (업종) 비제조업(단, 건설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및 충분한 검증절차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영업·투자·재무활동별 현금흐름정보 표시 • 비현금거래 등 관련 주석 공시 ※ (업종) 전 업종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 * 채무불이행·연체 같은 계약 위반,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 등 • 기대신용손실 측정 및 관련 주석 공시 *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 (업종) 제조업(단, 의약품 및 전자부품 업종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대가와 식별가능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공정가치 평가 * 평가가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근거 • 사업결합 내용 등 관련 주석 공시 * 이전대가, 주요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금액 등 ※ (업종) 전 업종 	2022-06-28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인식 *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 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 무이행시 수익인식 • 수익인식 관련 주석 공시 * 범주별(계약 유형 및 존속 기간별 등) 수익 구분, 계약잔액,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 ※ (업종) 비제조업(단, 건설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및 충분한 검증절차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영업·투자·재무활동별 현금흐름정보 표시 • 비현금거래 등 관련 주석 공시 ※ (업종) 전 업종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 * 채무불이행·연체 같은 계약 위반,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 등 • 기대신용손실 측정 및 관련 주석 공시 *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 (업종) 제조업(단, 의약품 및 전자부품 업종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대가와 식별가능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공정가치 평가 * 평가가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근거 • 사업결합 내용 등 관련 주석 공시 * 이전대가, 주요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금액 등 ※ (업종) 전 업종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7.12. 시행 예정)</p> <p>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상품 등의 이용요금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735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p> <p>이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 절차와 승인 절차를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절차 (제12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신고 대상인 방송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상품별 이용 요금·조건 등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 등 승인 대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절차 (제12조의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항목·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p>③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비 (별표 6 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이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p>2022-06-28</p>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7.1. 시행)</p> <p>생명공학·의료 분야의 발명에 필수적인 유전자 서열목록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이 개정(2022.7.1.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임시 명세서의 보정과 관련된 서류제출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유전자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 마련 (안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2, 제106조의13, 제106조의38, 별지서식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35호, 제41호, 제41호의2, 제43호, 제51호, 제51호의2, 제53호, 제5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서열목록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 관련 발명의 원활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p>② 임시 명세서 전문보정 전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의 반려 (안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명세서가 전문보정되기 전에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는 반려 대상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반려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누락된 절차를 보완함 <p>③ 전문심리위원 심판 참여결정 취소 요건 구체화 (안 제65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절차 참여결정을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2022-07-01
중소벤처 기업부	<p>•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 (2022.6.29. 시행)</p> <p>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p> <p>이에 따라, 창업의 범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해외 창업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창업의 범위 조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중소기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2022-06-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 개인인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법인화를 유도함 <p>②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성과 관련 정보, 창업공간 관련 정보, 창업교육 관련 정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등 창업관련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p>③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마련 (제1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성장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역량,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사업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원목적·내용·기간과 신청자격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p>④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마련 (제1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업기업 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하고 창업기업 등에게 투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춘 기관 중에서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p>⑤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 현황과 그 실적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p>⑥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 추가 (제4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불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보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2022.6.29. 시행) <p>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공포, 6. 29. 시행)이 전부개정됨</p> <p>이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경미한 변경 사항을 회사명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대표자 성명이나 공장입지 기준고시의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으로 정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 등으로 하며, 중소기업상담 회사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중소기업상담회사의 회사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2-06-29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운영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관련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정상작동 여부 검사근거 마련 등 검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p> <p>*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요소수 + NOX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차량의 매연검사(무부하급가속)에 적용한 "배출허용기준보다 5% 완화" 규정 삭제 (안 별표 21 제1호차목) * 일시적인 공기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 5% 완화 조치 → 현재 성능개선으로 불필요 - 경유차의 DPF 성능유지 검사기준(매연 10% 이하)를 적용하여 현재 중·소형에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안 별표 21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 무부하검사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기검사의 실효성·통일성 확보 (안 별표 2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 <p>② 운영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제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질소산화물 검사를 현재 중·소형에서 대형화물차까지 확대 (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 현재 수도권만 적용에서 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3호) - 배출가스 검사항목(부품·장치의 작동상태 확인)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센서의 정상 작동여부 검사 근거법 마련 (안 별표 26 제2호나목) <p>③ 타법 등과 연계하여 조문 현행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검사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는 구조변경 및 임시검사* 시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 (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4호) *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이어야 함으로 이를 명시 (안 별표 24 제1호다목) -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 전후 31일”로 변경 (안 별표 25 비고 제8호 및 제9호)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부 공동훈령)」개정('19.3.31) 	2022-06-2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 21)에 맞게 일산화탄소 검사기록 표기법 일치 (안 별표 26 제3호나목(3)(나))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서류를 전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안 제 86조의2제1항)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 (안 제86조의5제3항, 별지 제40호서식) <p>※ 의견 제시기간 : 6/27(월)~8/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교통환경과)로 제출</p>	
식품 의약품 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p>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 평가” 용어가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간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성 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p> <p>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관리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 연장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절차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p> <p>한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동 검사를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마련하여 부적합 용수를 사용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해평가 용어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위해성평가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안 제15조, 제15조의2, 제21조, 제44조 등) ② 영업자 외에 유흥종사자를 들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 정비 (안 제41조) 	2022-06-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③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연장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한 근거 신설 (안 제41조의2)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안 제41조의3)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교육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41조의4) <p>④ 영업자 등으로부터 지하수의 검사요청을 받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안 제46조의2)</p> <p>⑤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5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이 법률에서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로 명확히 함 -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규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p>⑥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품목제조를 하는 경우 영업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75조제1항제17호)</p> <p>※ 의견 제시기간 : 6/27(월)~8/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로 제출</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위원회	<p>•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이사·청산인의 등기, 설립등기, 변경의 등기, 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지역신문 일간지에 한정된 공고는 구독층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거래관계가 광범위한 현 시점에 비추어봤을 때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역 일간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등기한 사항의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65조의2)</p>	2022-06-29
정무위원회	<p>•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p> <p>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법률 부합 여부를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의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 등)</p>	2022-06-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송금·이체 행위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대신 자금을 직접 인출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거나 조력자를 모집하여 인출·교부하게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p> <p>이에 자금의 인출·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의 인출·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단적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여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다목·라목 신설 및 제15조의2 등)</p>	2022-06-24
정무 위원회	<p>•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p> <p>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여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p> <p>최근에도 디저트 프랜차이즈 Y가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가맹점을 기준으로 30%에서 90%를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하고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기재하면서 10% 더 부풀려진 매출액을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함</p> <p>가맹희망자들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과장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은 기대수익과 투자금액보다 낮은 매출로 가게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p> <p>공정위는 위 가맹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하기도 했음.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외의 피해를 입은 다수 가맹점주들은 위 피해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p> <p>이에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들에게 알리고, 가맹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허위·과장정보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35조의2 신설)</p>	2022-06-2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위원회	<p>•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p> <p>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에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p> <p>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를 부여함 (안 제10조)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본인 또는 임직원은 금융윤리자격인증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윤리자격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 제12조) 	2022-06-27
	<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p> <p>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과도하게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이용한 다이어트·성형·미용·의류 광고가 확산되어 청소년의 신체상에 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p> <p>그런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현방식의 부적절' 등의 경우만 모니터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로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과도하게 보정한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보정한 표시·광고에 대하여서도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3조제1항제1호 등)</p>	2022-06-2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기획재정위원회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p> <p>그런데 벤처기업등에 대하여는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선점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최근 영화, 음악,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시장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에 프로젝트 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출자와는 달리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도 법인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세 공제특례의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제1항)</p>	2022-06-27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4인)」</p> <p>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전기·수도·가스과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p>	2022-06-2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p> <p>최근 인터넷이 메타버스 환경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현실과 가상(디지털) 세계를 연결하여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이와 함께,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의 창·제작 활동의 잠재력이 대두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미래동력으로 메타버스콘텐츠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p> <p>이에 주요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으로 메타버스플랫폼 및 관련 기기의 발전을 도모 하면서,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진흥 및 글로벌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측면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의 메타버스콘텐츠 발전을 위한 개발 경쟁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p> <p>우리나라도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메타버스로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각종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버스콘텐츠가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되고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p> <p>메타버스콘텐츠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통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복합체이며,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제작자가 될 수 있음. 또한, 메타버스콘텐츠는 즉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특히, 메타버스콘텐츠의 원천은 문화·예술 등 창작활동이며 한류, 스포츠, 관광 등 문화·여가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p> <p>메타버스콘텐츠는 향후 메타버스 환경이 공고히 됨에 따라 디지털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을 통한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이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 활동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가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p> <p>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진흥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콘텐츠 이용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산업 기반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메타버스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메타버스콘텐츠 진흥과 이용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이 시급함</p> <p>따라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메타버스콘텐츠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민 문화·여가활동 증진과 메타버스콘텐츠 창작자 및 관련 기업 등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p>	<p>2022-06-27</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법은 메타버스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타버스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③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④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연구개발 지원, 공동 개발 및 이용 촉진과 함께 메타버스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 ⑤ 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 및 세제 지원 및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안 제23조)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⑧ 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메타버스콘텐츠진흥원이나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30조)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때 메타버스콘텐츠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안 제35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과 주택건설·택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현행법령에는 공급대상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공급대상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데에 주요 역할을 하는 공급대상지역 지정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p> <p>이에 공급대상지역 지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자문위원회가 미리 청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p> <p>한편, 지금까지는 공급대상지역으로 결정되면 집단에너지 공급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교체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음</p> <p>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정 기간마다 공급대상지역별 사업을 평가하고 공급대상지역 지정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공급대상지역별 사업을 평가하여 공급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공급대상지역지정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위원회가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안 제5조의2 신설) 	<p>2022-06-24</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p>•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3년의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 혜택이 중단되고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p> <p>특히 초기 중견기업들은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시기보다 매출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이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p> <p>이에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항)</p>	2022-06-29
환경노동 위원회	<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3인)」</p> <p>환경부에 의하면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p> <p>더구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논의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p> <p>한편,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과 회수율을 높이고 있고, 독일은 1회용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R-RET) 의무사용률을 부과하여 석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virgin PET)의 사용률을 줄여나가고 있음</p> <p>이에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 등까지 확대하고,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p> <p>아울러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율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권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p>	2022-06-2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국토교통위원회	<p>•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3인)」</p> <p>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실태점검의 실시여부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시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p> <p>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경우처럼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자가 이러한 시공관리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p> <p>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또는 실태점검의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 48조제1항 단서 신설 등)</p>	2022-06-30
	<p>•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p> <p>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긴급구조기관 등에 사고위치·차량정보 등의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하는 Emergency Call 단말기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차량 단독사고와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에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4 신설 등)</p>	2022-06-30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7/5(화) 10:30	「의회정보 자문회의」 개최 - 디지털 전환과 의회정보서비스	도서관 제1회의실
입법조사처	7/4(월)	「이슈와 논점」 제1969호 발간 - 한미 대북정책의 내용과 쟁점 : 위기의 고조와 기회의 모색	
	7/5(화)	「이슈와 논점」 제1970호 발간 -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4(월) 10:00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	유경준 의원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7/4(월) 14:00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투자자 보호방안	윤창현 의원실, 뉴스핌	의원회관 2세미나실
7/4(월) 14:00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장혜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4(월) 14:00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 토론회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4(월) 15:00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	이상민·최혜영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7/5(화) 14:00	청년의 시각으로 본 국방정책의 현재와 미래	안규백 의원실, 바른소리 청년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7/5(화) 14:00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서정숙 의원실, 연세대 관리연구소	의원회관 1세미나실
7/6(수) 10:00	여성창업 정책 대전환 정책토론회 - 여성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술기반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한무경·김경만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7(목) 14:00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 의료	신현영 의원실, 대한노인병학회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8(금) 14:00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자 기관투자자의 Engagement	이종성 의원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41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2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7호 발간 - 프랑스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	
예산정책처	6/29(수)	「NABO 경제동향」 6월호 발간	
	6/30(목)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 발간	
입법조사처	6/28(화) 07:30	제18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모빌리티의 미래, 세상의 변화	ZOOM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27(월) 14:00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조승래 의원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6/27(월) 14:00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	이용우 의원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7(월) 14:00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8(화) 10:00	국회 「모빌리티 포럼」 4차 세미나 -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모빌리티 포럼」, 권성동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6/30(수) 09:30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